보 도 자 료
(농 림 부)

○ 제공일 : 2006. 2. 15.
○ 제공자 : 농림부 소비안전과
○ 과 장 : 심 상 인
○ 사무관 : 고 경 봉
○ 전 화 : 500-1838

이 자료는 2006년 2월 1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(Traceability) 본격 추진

□ 농림부는 선진 안전성 강화제도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(Traceability)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.

○ Traceability는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여, 안전성 문제 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.

□ Traceability를 시행할 경우 안전성 문제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, 해당 농산물의 이력정보가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만큼 국내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□ 한편, Traceability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생산·유통·판매자가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○ 생산자가 GAP(우수농산물관리제도)도 하고자 할 경우 GAP 인증 신청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GAP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, GAP와 관계없이 Traceability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
○ 유통자(수확후 관리시설 대표자)는 GAP도 하고자 할 경우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신청시 Traceability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, GAP와 관계없이 Traceability만 하고자 할 경우에는 Traceability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.

○ 판매자는 Traceability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.

-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T:031-446-5595)에 문의하면 된다.

<첨부>

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(Traceability) 개요

1. 제도의 정의

○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(Traceability)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생산·유통관련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역추적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(리콜·용도전환·폐기처분)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2. 목 적

○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

○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

○ 품질관리·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

3. 등록절차

○ 이력추적 농산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생산자·유통자·판매자는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(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,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)를 구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출장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,

○ 우수농산물인증(GAP)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와 수확후 관리자(농산물의 선별·포장 등을 하는 자)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 등록신청서 제출(우수농산물인증기관은 동 서류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송)

※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신청제로 운영이 되나, 우수농산물인증(GAP)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는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를 해야 함

4. 이력추적품 관리

○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는 농산물의 생산·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이력추적품에는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할 수 있음

○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이 혼합되자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

5. 행정처분 및 벌칙

○ 이력추적관리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·정지, 판매의 금지,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

○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○ 이력추적품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, 표시의 정지, 또는 판매의 금지처분에 따르지 않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○ 이력추적품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시료수거·조사·열람 등을 할 때 이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"참고2"

외국의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추세

1. 국제적 추세

○ 국제적으로 광우병 파동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,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, 점차 농산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

○ Traceability의 도입은 국내의 소비자 안전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

2. 유 럽

○ EU는 쇠고기 라벨링을 강제하는 규칙[Regulation(EC) 1760/2000 (Beef Labeling Regulation)]을 채택하고 2001. 1월부터 소와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도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토록 하였으며,

○ EU 식품기본법[Regulation(EC) 178/2002] 제18조에 따라 2005.1월부터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음

3. 일 본

○ 2003년 정기국회에서 「소의 개체식별정보의 관리와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채택됨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의무화 됨('03.12월 일부시행, '04.12월 전면시행)

○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·품목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, 농협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도와 유사한 생산이력제도를 운영

4. 북 미

○ 미국은 이력추적제도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식품회수프로그램이 있으며, 캐나다의 경우는 식품회수프로그램에 Traceability가 도입되어 있음

"붙임3"

Traceability관련 Q & A

1 "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(Traceability)"란 ?

○ "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"란 농산물의 생산·유통·판매 과정의 정보를 기록·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을 역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진제도로, 금년부터 시행 됩니다.

2 농산물 생산자·유통자·판매자가 해야 하는 일은 ?

○ 이력추적농산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생산자·유통자·판매자는 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관할 출장소)에 이력추적등록을 하고,

○ 당해 농산물의 생산·유통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, 이력추적관리품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
○ 농산물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지에 이력추적관리품 임을 표시(인쇄, 스티크 부착 등)하여야 합니다.

3 이력추적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?

○ 우수농산물 인증품을 취급하는 생산자(농업인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 등)·유통자(APC, RPC, 도매업자 등)·판매자(대형할인점, 농협하나로마트, 소매업자 등)와 이력추적관리품 취급을 희망하는 생산자·유통자·판매자 입니다.

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절차는 ?

○ 이력추적 등록 희망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출장소(시· 군 소재)에 등록신청을 하면, 해당기관은 심사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.

5 등록자가 관리해야 하는 생산·유통관련 정보는 ?

○ 생산자가 관리해야 할 정보는 농산물 생산정보(품목, 재배지, 농약·비료 등 사용내역)와 출하정보(언제·누구에게·어떤 품목을·얼마만큼 팔았는지) 입니다.

○ 유통자가 관리해야 할 정보는 농산물 입·출고정보(언제·누구에게·어떤 품목을·얼마만큼 사서, 누구에게 팔았는지)입니다.

○ 판매업자가 기록·관리하는 정보는 농산물 입고내역(언제·누구에게·어떤 품목을·얼마만큼 샀는지)입니다.

6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은 ?

○ 이력추적관리품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자가 포장지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를 하게 되며, 그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표준 이력추적관리품 표시>

	*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입니다.		
구 분	기 재 내 용		
원산지(시도/시군)			
품목(품종)		GMO여부	
중량·개수		등 급	
생산자 (작목반명)	성 명		
	주소(전화번호)		
수확후 관리시설	시설명		
	주소(전화번호)		
이력추적관리번호			

<소포장·낱개포장 이력추적관리품 표시>

	*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관리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입니다.
이력추적관리번호	

7 "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"와 "우수농산물관리제도"와의 관계는 ?

○ "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"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과정을 명확히 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이며,

○ “우수농산물관리제도”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농약·중금속·미생물 등을 관리하여 농식품 위해요소가 농산물에 혼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제도 입니다.

○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입니다만, ‘금년부터 도입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우수농산물인증품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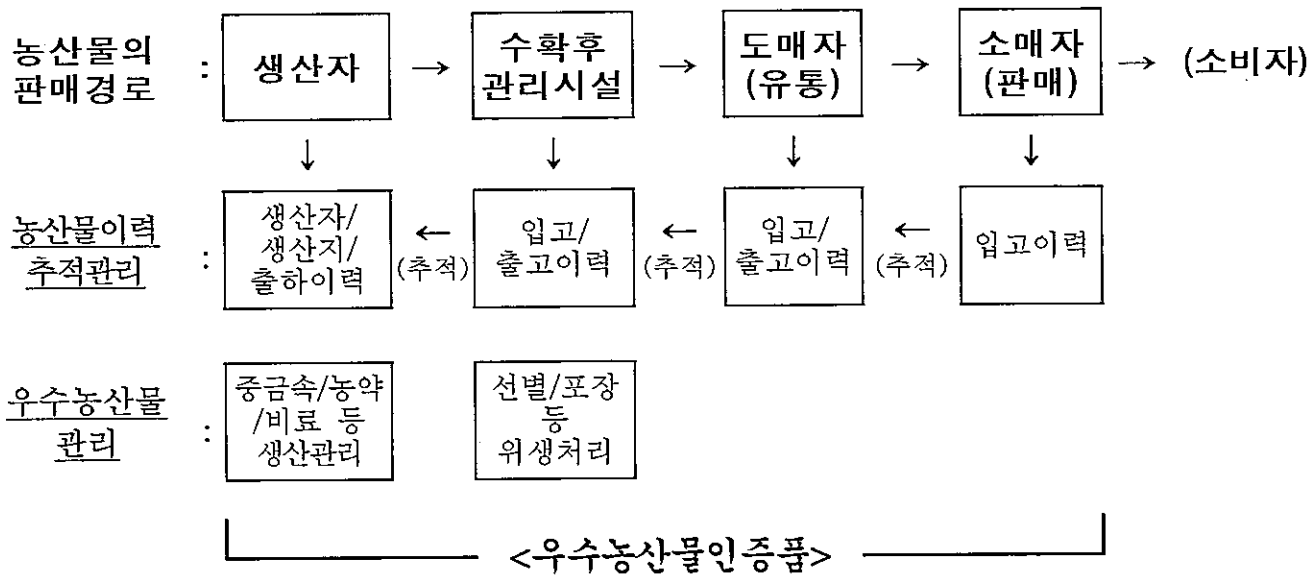

※ 우수농산물인증품 : 농산물이력추적관리 + 우수농산물관리

⇒ 안전성이 강화되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농산물

8 농산물이력추적 농산물을 취급하면 잇점은 ?

○ 농산물이력추적관리체계가 확보되면 농산물에 대한 정보(농약·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내역, 유통경로 등)가 역추적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 소비자는 안심하고 동 농산물의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
○ 이에 따른 반사적 혜택(농산물의 판로확보, 농산물 판매수입 증가 등)이 농가·유통자·판매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.

9 이력추적농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리절차는 ?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농약·중금속·곰팡이독소·식중독균·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의 용도전환·폐기·리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10 이력추적농산물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?

○ 이력추적품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품 표시를 하거나, 이력추적품이 아닌 농산물과 이력추적품을 혼합하여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·진열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[별지 제4호의9서식]

(앞 쪽)

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				처리기간 42일
신청인	성 명 (단체명)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전화번호			
	주 소			
품 목(품종)	(판매업소는 기재를 생략)			
관리단계(해당단계에 ○표 표시)				
생산단계		유통단계		판매단계

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※ 구비서류

1. 농산물이력추적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1부.
2. 이상품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.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

(뒤 쪽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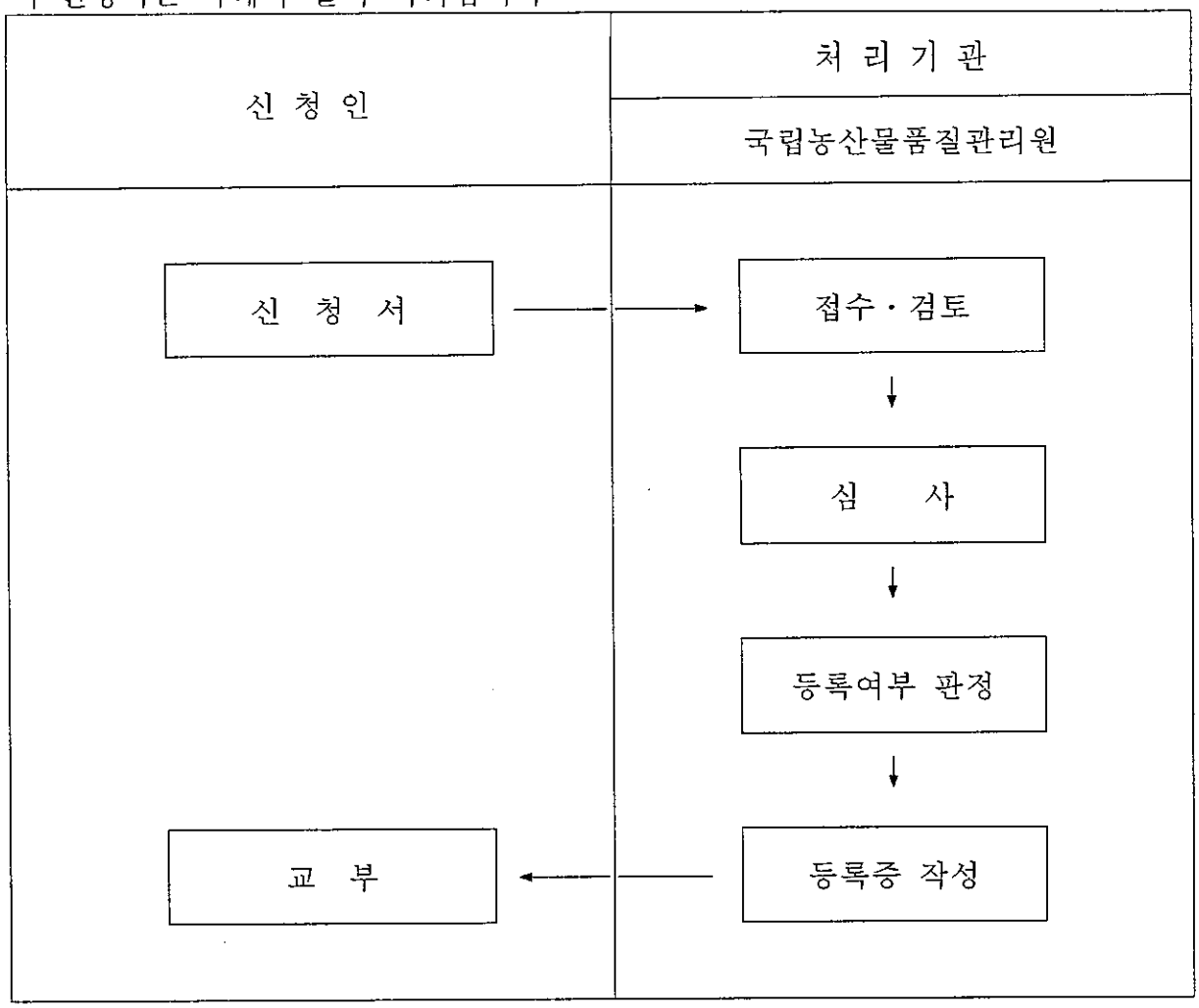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